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위반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주)한국웨일즈제약]

1. 우리 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한국웨일즈제약”의 「약사법」 위반 사항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해당업체가 제조·판매한 전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해성 등급: 2등급

2. 아울러,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사에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수안내문 1부
2.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지침 1부. 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한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충청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관리총괄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약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식의약품안전과장),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동조합,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보건복지부장관(보험약제과장)

주무관	김효진	주무관	이경욱	의료제품안전과장	전결 08/21 김기만

협조자

시행 의료제품안전과-6250 (2013. 08. 21.) 접수

우 427-805 경기 과천시 중앙동 1~35 정부과천청사 5동 712호 / http://gyeongin.mfds.go.kr

전화 02-2110-8077 전송 02-2110-0810 / blue56@korea.kr / 대국민 공개

친절 · 청렴 행정, 식약처의 자존심입니다. 부조리신고센터(www.mfds.go.kr)